

## 의과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

2014. 3. 1 제정  
2015. 9. 1 일부개정  
2017. 3. 1 일부개정  
2017. 9. 1 일부개정  
2018. 3. 1 일부개정  
2022. 1. 1. 일부개정  
<학사팀>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2조에 따라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졸업요건) 의과대학 졸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등록학기: 의예과 4학기 이상, 의학과 8학기 이상
2. 취득학점: 의예과 74학점 이상, 의학과 172학점 이상

제3조(유급) ① 유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기유급: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.
  - 가. 의학과 전공 교과목 중 어느 하나에 F 등급이 있는 경우 <개정 2022. 1. 1.>
  - 나. 학기의 평균평점이 1.75 미만인 경우
2. 학년유급: 의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.
  - 가. 의학과 전공 교과목 중 어느 하나에 F 등급이 있는 경우 <개정 2022. 1. 1.>
  - 나. 학년의 평균평점이 1.75 미만인 경우
  - 다. 휴학 또는 제적처리될 경우.

② 유급 시 해당 교과목(또는 학년)의 성적이 무효로 되어 해당 교과목(또는 학년)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.

1. 학기유급: 기수강 교과목 성적이 D+ 등급 이하인 의학과 전공 교과목을 다시 이수(단, 기수강 교과목 성적이 C 등급 이상인 과목은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) <개정 2022. 1. 1.>
2. 학년유급: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

③ 유급이 결정된 학생은 학생행복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야 한다.  
<신설 2022. 1. 1.>

제4조(휴학) ① 휴학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의예과: 통산 3학기
2. 의학과: 통산 6학기

② 휴학 또는 복학 신청 시 사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 
<신설 2022. 1.1.>

제5조(학년) ① 의예과 학생의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학년: 취득학점이 35학점 이내인 학생
2. 2학년: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36학점 이상인 학생

② 의학과 학생의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학년: 취득학점이 42학점 이내인 학생
  2. 2학년: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43학점 이상 85학점 이내인 학생
  3. 3학년: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86학점 이상 128학점 이내인 학생
  4. 4학년: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129학점 이상인 학생
- ③ 학기 수는 등록횟수에 의하며, 의학과 학생은 의학과에서의 등록횟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6조(의학과 학생에 대한 불응시 인정점수 불허) 의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「고려대학교 학칙」 제45조 제2항,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9조 및 제70조에 의한 불응시 인정점수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, 그 대신 추가시험을 과하여 성적을 평가한다.

제7조(제적) ① 「고려대학교 학칙」 제20조가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과대학 학생은 제적한다.

1. 의학과 1,2학년의 경우 동일한 학년의 동일 학기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  
<개정 2022. 1. 1.>
  2. 의학과 3,4학년의 경우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
  3. 재학기간 중 4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
- ② 휴학으로 인한 유급은 제1항의 횟수적용에서 제외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①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 따라 「학칙시행세칙(II)」는 폐지한다.  
② 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: 제7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횟수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7조 제1항 제1호, 제2호)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, 3항 삭제, 제7조 제2항 개정)
2. (경과조치) 제7조 제1항의 횟수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6조 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 
(개정조항: 제2조 제2호 및 제6조)
2. (경과조치) 제2조 제2호 및 제6조는 2018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3조, 제4조 및 제7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2021학년도 1학기에 유급하여 성적이 무효된 타 학과 과목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